

울산다운2 A-9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12.01.)

1. 건설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산25번지 일원 울산다운2지구 내 A-9블록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신청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으로 인한 착오안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다운2 A-9블록 신혼희망타운(1,252세대)은 행복주택(417세대)과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835세대)이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행복주택 건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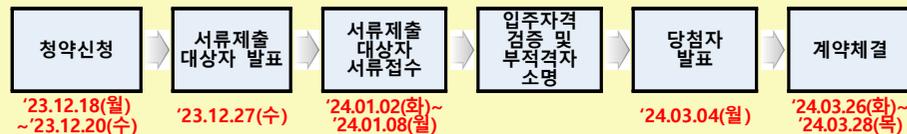
• 울산다운2 A-9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0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기타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신혼부부**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2016.12.02 이후 혼인)
 - 2) 만 6세 이하(2016.12.02 이후 출생)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2016.12.02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신청 불가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공고일이 같은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2. 공급 일정

청약신청 (인터넷 PC/모바일)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전자계약)
'23.12.18(월) 10:00 ~ '23.12.20(수) 17:00	'23.12.27(수) 17:00 이후	'24.01.02(화) 10:00 ~ '24.01.08(월) 16:00	'24.03.04(월) 17:00 이후	'24.03.26(화) 10:00 ~ '24.03.28(목) 17:00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서류제출방법) 등기우편, 인터넷 (등기우편발송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LH부산시가지본부 4층 임대공급운영부 울산다운2 A-9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 등기우편은 '24.01.08(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일반우편 접수불가 (인터넷 제출방법) - PC : LH 청약플러스 → 온 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첨 결과조회' 또는 ARS(1661-7700)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명칭 : LH청약플러스)로 가능합니다.
* 접수마감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PC, 모바일) 청약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12.27(수) 17시)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24.01.02~01.08)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및 서류제출안내문 확인 방법
- PC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상단 『청약』 클릭 → 가운데 아래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선택

신청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LH에 통보(변경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 안내, 계약 및 입주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당첨 및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24.01.08(월)의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하며, 향후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순위 및 추첨 결과에 의해 낙첨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 필수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미기재 사항 등 부적격 사항 발생 시 접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블록	주택형	공급대상	금회 공급호수 (417호)		세대 당 계약면적(m²)				최대 거주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예정 시기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장				
A9	55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45	145	55.93	24.1361	6.5461	40.1248	126.7370	6~10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 개별 난방	'25.06 (예정)
	55AS (주거약자)		10	11	55.93	24.1361	6.5461	40.1248	126.7370			
	55B		36	37	55.97	24.1534	6.5507	40.1535	126.8276			
	55C		16	17	55.93	24.1361	6.5461	40.1248	126.7370			

■ 임대조건

(단위: 천원)

블록	공급형	공급대상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5%)	잔금(95%)				
A9	55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64,400	3,220	61,180	268,330	(+) 27,000	91,400	110,830
	55AS						(-) 54,000	10,400	425,830
	55B								
	55C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5년 06월 예정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단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공분양과 행복주택이 혼합된 주택이며,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을 실시합니다.
- 금회 모집 행복주택(A9블록 417세대)은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55AS형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세부요건은 공고문 「4-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주택)」 확인)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 「14. 주거약자용 주택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침실2-알파룸(55A-AS-55B-55C)은 분리공간으로 공급되고, 바닥재는 '강화합판마루'로 설치되며, 분양세대 적용옵션은 선택 불가합니다.
- 위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기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하는 시기는 입주시작 약 1개월 전에 우리공사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 예정인 분들도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상 계약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나,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단, 세대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거나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중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4-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0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㉔와 ②~④, 예비신혼부부는 ①-㉔와 ②~⑤, 한부모가족은 ①-㉔와 ②~④)을 모두 갖춘 사람

①-㉔ (신혼부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2016.12.02 이후 혼인)
- 2)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만 6세 이하(2016.12.02 이후 출생)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①-㉔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①-㉔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2016.12.02 이후 출생)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세대의 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②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일 것 (단, 2인가구는 110%, 맞벌이 2인가구는 130%)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	기준
2인	5,505,914 원 이하	110%	6,506,989 원 이하	130%
3인	6,718,198 원 이하	100%	8,061,838 원 이하	120%
4인	7,622,056 원 이하	100%	9,146,467 원 이하	120%
5인	8,040,492 원 이하	100%	9,648,590 원 이하	120%
6인	8,701,639 원 이하	100%	10,441,967 원 이하	12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맞벌이 793,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계액이 **36,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 ④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세대구성원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예비신혼부부"의 세대구성원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계약자가 될 1인을 뜻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시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제출하여야 함.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공급신청 시 입력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입주 시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 계약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맞벌이로 신청할 경우 소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됨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울산광역시 또는 연접지역(부산광역시, 경주시, 청도군, 밀양시, 양산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상남도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함.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입주자모집공고일(23.12.01.)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 자격 미 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여야 함.)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울주군 에 거주하는 자
2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울주군외 울산광역시 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울주군에 3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울주군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람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우선공급 2순위 배점항목은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만 적용함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울산다운2 A-9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주택관리번호 : 2023000661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동일 배점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 **주거약자 아닌 사람이 주거약자용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 주거약자용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01) 현재 4-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

- ※ 주거약자가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에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주거약자” 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울산광역시 또는 연접지역(부산광역시, 경주시, 청도군, 밀양시, 양산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상남도 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함.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주거약자용 배점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 (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아래 ‘부양가족의 범위’ 참고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울산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함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거약자용 우선공급대상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입주자모집공고일(23.12.01) 현재 **주거약자용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시 부적격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형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 우선공급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울주군 에 거주하는 자
2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울주군외 울산광역시 에 거주하는 자

* 주거약자용 우선공급의 경우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 발생시 **주거약자용 배점합산**에 따라 입주자 선정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경쟁시 배점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울산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함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주거약자용	우선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 동일 배점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5. 입주자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무주택 및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됩니다. 누락, 착오신청, 허위신청으로 인하여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른 경우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의 해당순위, 해당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 중 울산광역시 계속 거주기간과 관련하여, 공고일(2023.12.01) 기준 울산광역시에서 거주할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거주 시작일에 주민등록표초상 상 울산광역시 거주시작일자를 입력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됨)

■ 인터넷(PC)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토스·KB 인증서)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토스·KB 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토스·KB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접속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토스·KB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하단의 **신혼희망타운** 클릭

③ 인터넷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 접수기간은 '23.12.18(월) 10:00 ~ 12.20(수) 17: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상단의 '마이페이지'를 클릭하면 청약신청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청약플러스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모바일기기(스마트폰/태블릿)에 'LH청약플러스'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① 'LH청약플러스' 어플(App) 설치

- IOS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 Google Play(구글플레이)에서 "LH청약플러스" 검색 및 설치

② 모바일기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또는 네이버·토스·KB 인증서 발급)

- 모바일기기(스마트폰 및 태블릿)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공동인증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 접수기간은 '23.12.18(월) 10:00 ~ 12.20(수) 17: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 수정·취소 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모바일청약은 모바일기기(스마트폰 등)의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PC로 청약한 것을 모바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모바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모바일앱 사용자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6. 인터넷(PC·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 서류제출 방법

- ① 인터넷 접수(전자파일 업로드),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PC, 모바일)

- 인터넷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PC,모바일)을 통해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①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PC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고객센터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고객센터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인터넷 서류접수 이용시 전자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전자공동인증서가 기한 만료 등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 전자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등기우편 서류접수

- 등기우편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등기우편물 발송을 통해 담당부서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4.01.08(월))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등기우편발송 주소

(우편번호 48733)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LH부산울산산지역본부 4층 임대공급운영부 울산다운2 A-9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 인터넷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PC, 모바일)

- 인터넷 서류제출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웹) 또는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
- *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한 모바일 서류접수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는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터넷 서류접수가 중단될 경우 현장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현장접수는 마감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가능 파일은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청약플러스 안내 참조)
-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처,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촬영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모바일은 7종 허용(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PC, 모바일 앱) 서류제출 시 원본 서류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 식별불가 및 원본확인필요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서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신청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0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1***** (X)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서류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한에 제출**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부수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등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예비입주자 중보신청 불가사항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방법) 내용 확인 후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별지1-1 공사서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작성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각 1통 (별지 1-2,1-4 공사서식)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협정보)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별지1-3 공사서식)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별지1-3 공사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확정일자 대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장리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 (주의)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해당자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한부모가족"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임신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맞벌이로 신청 시, 근로소득자인 경우 신청자·배우자 각각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예비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및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미혼인 경우도 발급가능) • 맞벌이로 신청 시, 근로소득자인 경우 신청자·배우자 각각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1통 (공사양식) 행정복지센터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공급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여야함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입주 시점에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순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만 제출 • 맞벌이 부부 신청한 경우 → 본인과 (예비)배우자 모두 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의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 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국세청 해당 직장사무서
<p>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시 청약통장 사본 제출(미제출 시 입주불가,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됨)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행정부지센터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12.7.1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④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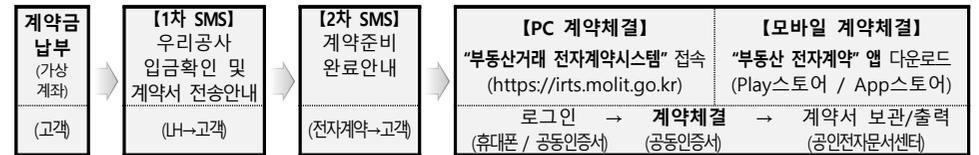
■ 당첨자 발표 : '24.03.04(월)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태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정합니다.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계약안내

- 전자 계약 : '24.03.26(화) 10:00~'24.03.28(목)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계약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체결 절차】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비특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 「1차 SMS」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 ~ 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1차 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9. 무주택·소득·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 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 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 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한국장애훈공단 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근로소득)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제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제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지방세정 자료 - 지방세정 자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10.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p>■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e0ff;">입주자격</td> <td style="background-color: #e0e0ff;">최대 거주기간</td> </tr>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 <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 </tr> </table> <p>■ 재청약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예비입주자	<p>■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예비입주자로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급대상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갱신계약 등	<p>■ 갱신계약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p>■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준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table border="1" data-bbox="203 376 1025 499">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최초 갱신계약 시</th> <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20%</td> <td>130%</td> </tr> <tr> <td>30%초과</td> <td>130%</td> <td>140%</td> </tr> </tbody> </table>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기간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자동차 등록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 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3년의 경우 3,683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공 후 감리업체 및 시공업체 등이 하자보수와 관리 등의 사유로 부대복리시설을 일정기간 사용 														

	<p>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계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양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남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구 및 단지특성	<p>■ 지구 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대운2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72호, 2022.11.30)로 승인된 “울산대운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6차)”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해당 인허가 승인조건 이행, 지자체 의견, 민원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대상지 인근 1km 이내 울산-포항고속도로, 국도14호선 다운~구영간 도로, 대전초, 다운중, 다운고 입지, 3km 이내 국도24호선, 울산고속도로, 울산교육청 입지, 5km 이내 울주군청,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 등이 위치함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음 - 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음

- 본 지구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선편 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지구 지구와 연결도로(3개소)의 경우 사업추진 중 관계기관 협의, 민원 등의 사유로 일부 변경,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주시기와 개통시기가 상이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외 도로의 경우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여건**

- 근린공원1,2호 내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원형보전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지구 공원 내 방재 시설인 저류지가 중복결정되어 설치 예정임
- 사업지구 대1-10호선(국도14호선)과 연결한 주거시설 인근에 방음벽이 계획되어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변 개발계획(공원계획 포함)은 미확정 상태로, 관계기관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초 사업지구 내 송전철탑 4기 설치되어 있었으나, 송전철탑 철거 후 지중화 공사에 따른 케이블 헤드 부지 2개소 계획되어 있으므로, 지구 내 케이블헤드 위치 및 미관, 사업지구 외 송전철탑 위치 및 미관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지구 내 송전철탑 지중화 공사에 따른 임시송전선로 6기는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완료 예정시기인 '25년 내 철거 예정이나 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철거가 지연 될 수 있으며, 입주 시 임시송전선로 위치 및 미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울산다운2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청약·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909동 인근(단지 외부 동측)에 보상암(절)이 위치하여 소음 등의 입주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901동 902동 903동 인근에(단지 외부 북측) 묘가 위치해 있음
- 912동 인근에(단지 외부 남동측)에 묘가 위치해 있음
- 908동 인근에(단지 외부 북측, 동측) 묘가 위치해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단지의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2.7m로 확보되어있음(일부구간은 편차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음
- 본 단지 주차대수는 세대당 1.2대로 설계되어 있음.(단,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주차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주변으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함
- 쓰레기 분리수거함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한 RFID방식 전용수거용기가 제공됨
- 본 단지는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남측에는 중학교용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북동측에는 기존 산림이 연결해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하며, 단차부위는 옹벽 등이 설치될 예정임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레벨차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외의 조경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로 인근 지구외 산지 유입수 처리를 위한 산마루측구, 집수정 등이 단지 내에 설치되며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필로티, 지상1층에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 포함)과 외부에 설치되는 휴게공간 등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불편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단지배치 등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 913동 지하층에 사회적기업 및 근린생활시설이 설치 운영됨
- 종합보육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한 동의 저층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901동 및 916동 지하층에 인접하여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비상발전기의 주기적 시험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단지 내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은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시 일부 인접세대는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지붕 및 옥탑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901동, 903동, 904동, 906동, 908동, 914동 아파트 외벽에 축리용 피뢰침이 시공됨 (단, 설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각 동 지붕층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 동 별 설치 위치와 면적(용량)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서 인근동 옥상 및 옥탑의 태양광발전설비, 피뢰침설비, 이동통신중계기 등이 보일 수 있음
- 본 단지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 공법 적용 시 공용 전기 세 및 하수도 요금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주방창호 외부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으며, 진.출입 경사로는 우기 및 동 절기에 차량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 등이 일부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분진,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역건상 일부동 전체와 일부세대는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층부 입주자는 이사 전 반드시 이사업체의 현장 확인을 요청하여 사다리차 이용 가능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아파트 지하 및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 및 제연팬이 설치되어 장비 가동 시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및 PIT층은 지반상향 등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관할 소방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소방차전용구역의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전후면 공기안전매트 전개구간에는 고목 식재 및 시설물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저층 세대의 경우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식재, 조경시설물 등의 조경계획은 향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환풍이 설치되며, 각동측벽 및 주변 환풍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주차장 진.출입시 경보음 발생과 단지내 외곽도로등 차량전조등 불빛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환기구,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일부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됨
-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설비인 한전 PAD TR 및 PAD SW가 단지 내부 또는 출입구 주변에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인접세대의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단,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인접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여건에 따라 녹지 및 시설 설치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옥상에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상층 및 주위 세대의 경우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층(지하1층, 지하2층) 엘리베이터홀에 환기설비 및 제습기가 설치되며, 장비 가동으로 인한 전기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되며, 일부 세대의 발코니 천정에 차압감지관 마감캡이 설치됨
- 단지 내에는 공공분양(835세대) 및 행복주택(417세대)이 같은 동 내 혼합 배치되어 있음
- 인동거리는 법적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일부 동의 경우, 층,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부 일조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은 대상이 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복카페, 방과후교실 등), 어린이집 등에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단, 피트니스센터에 운동기구가 제공될 예정이며 설계 및 제공되는 운동기구(의자, 소파 등 이동식가구 등 기타 비품은 일체 제공되지 않음)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일부 동 지하층에는 계절창고 설치되며, 관리주체의 운영방식에 따라 입주 후 별도 운영됨
- 동 지하 계절창고에는 결로, 곰팡이 방지를 위하여 팬, 제습기 등 가동과 입주자의 지속 관리가 필요함
- 915동 하부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음
- 915동 지하1층에 인접하여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방재실 및 MDF실이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스마트우편함은 각 동 1층 출입구에 설치될 예정이며, 무인택배와 분리형으로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상 변경 될 수 있음
- 관계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출입구,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부, 생활자원보관소, 단지 내 출입구에 CCTV카메라가 설치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 승강로 및 권상기실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임. 이와 관련, 공사는 아파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울산광역시와 체결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 서면으로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지형상 909동 남측면에 콘크리트 옹벽이 시공되어 저층부의 조망이 침해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안테나 및 중계기가 905동, 910동, 911동, 913동, 915동, 916동 옥상 및 지하층 헬름#2, 헬름#15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장소 및 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IOT비상호출버튼은 부부욕실에 설치되며 비상사태 발생시 경비실 또는 관리소로 비상 통보되며 별도의 통화 기능은 없음
- 세대 무인경비 동작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및 침실, 거실의 창호 측면 천정부위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층의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 천정부 1개소에 설치됨
- 스마트홈생활정보기가 설치되며, 일괄소등(현관센서등 제외), 엘리베이터 호출 및 가스차단 기능을 하며, 화면에는 현재시간 및 외부날씨(온도, 미세먼지정보)가 표현됨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디지털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될 예정임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의 입구표시 및 층별 만차상태를 표시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차량의 원활한 주차를 유도하는 입구종합 만차등이 설치될 예정임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출차주의 경광등이 설치되며, 인근동에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해당지구는 AI차량유도시스템을 적용하지 아니함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유도등 등이 시공됨
- 세대 내 통신단차함은 신발장 후면에 설치되며, 세대분전반은 거실통로벽면에 매립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무선랜(무선AP) 초기비밀번호는 입주 시 안내될 예정이며, 입주 후 비밀번호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904동 옥상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홈네트워크시스템 세대단말기(WallPad10"LCD)는 게이트웨이와 통신하며 방범서비스(도어카메라, 현관자석감지기 및 동작감지기와 연동), 제어서비스(가스밸브차단, 거실 및 침실1 네트워크스위치조명, 난방, 환기, 디지털도어록), 대기전력차단서비스(대기전력차단스위치 연동), 단지공용기본서비스(공동현관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차량통제시스템, 전기차충전시스템연동)를 제공함
- 세대내 스피커, 동작감지기는 기본적으로 천정형으로 설치 되나, 최상층의 경우 벽부형으로 설치 될 수 있음
- 현관, 발코니 등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부평형은 4층부터 최상층까지 대피공간이 시공되며, 3층부터 10층까지 발코니 내에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임. 그에 따라 외부창호 형태 및 발코니 구간은 층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철재 방화문이 설치될 예정으로,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되는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대피공간은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대피공간(1~3층은 동일 위치)의 창호는 3층 이상은 안여닫이창, 1~2층은 미서기창이 설치됨(팜플릿 확인 요망)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세대아트월부위는 일부 경량벽체로 별도 보강 하여 경량벽체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함
- 세대 내 경량벽체는 칸막이 구조로, 인접한 거실 또는 침실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벽지(도배)는 봉투바름(테두리바름)으로 시공되어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음
- 세대 천장고는 2.3m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를 가구 등으로 임의로 가릴 시 누수, 결로 등의 문제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주의를 필요함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별도의 마감미 없음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음
-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 등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조명기구는 천장형으로 설치될 예정임. 단, 최상층의 경우 천장 단열여건에 따라 벽부형으로 설치될 수 있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및 환기유닛 전용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됨
- 거실에어컨 전용은 실외기전원을 이용하고 침실1에어컨 전용은 일반콘센트전원을 이용함
- 침실1 발코니에는 자체 조명기능이 탑재된 빨래건조대(리모컨으로 점등 가능)가 설치되며, 별도의 조명기구는 설치되지 않음

- 실외기실 조명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됨(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급수계량기함은 타입에 따라 E/V홀 건식PD 내부 또는 세대 내부에 설치될 수 있음
- 주방가구, 반침가구, 조명기구, 월패드, 소화용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팜플릿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음
- 개별난방 방식으로 가스보일러(콘덴싱)으로 적용시 연통(급,배기통) 상향으로 설치되며, 세대 내부에서 보일 수 있음. 응축수 배관을 배출하는 배관이 보일러 하부에 별도 설치됨
- 일부 발코니, 실외기실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함
- 수도꼭지(세탁, 손빨래, 물뿌리기)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및 침실1에 매립되는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을 기준으로 설치되며, 침실1의 에어컨실내기 매립박스는 액자형 기준으로 설치되므로 가로형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매립형박스가 노출될 수 있음
- 타입별로 전면 또는 후면에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시공되며,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및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는 세대환기용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설치됨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공기배출구, 흡입구)는 거실과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시 소음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됨
- 세대욕실 천정에 점검구가 설치됨
- 주방가구 개수대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어 수납이 제한적임
- 주방가구 후드장 상부는 수납이 제한적임
- 1층 동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활동을 위한 연결송수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세탁기실 및 에어컨 실외기실 등)는 대용량의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및 건조기 등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세탁기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사이즈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세탁기 후면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보일러 수리시 세탁기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음
- 주방배기 방식은 55형은 공용주방배기 방식임.
- 가스배관 지상층 일부는 캐노피 등 벽체 외벽의 수평, 수직 배관에 방법을 위해 배관 커버가 설치될 수 있음
- 3~10층 일부 발코니(대피공간)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완강기가 설치됨
- 주방 레인지후드 상부장 내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어 수납장 사용에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현관 신발장 내 분말소화기가 비치되어 신발장 사용에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일반 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 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팜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는 불가함
- 공동주택 성능 등급은 예비인증 내용과 본인증시 달라질 수 있음

11.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1) 소음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을 차단성능		★★★★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외부소음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화장실 급배수소음		★

2) 구조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조경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친환경인증제품사용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 ★로 해당 등급 표시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수자원 절약	절수형 기기 사용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중수도 설치	-
에너지절약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신 재생에너지 이용	-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 물질의 사용금지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우수부하 절감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4) 생활환경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보행자도로	단지 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교통부하저감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효율적인 건물관리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사회적 약자배려	공용공간	★
	전용공간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방법안전	방법안전 콘텐츠	★★

5) 화재소방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수평피난거리	★★★★
피난안전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내용	적용여부	내용	적용여부
외벽(직접면)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고효율LED	적용
지붕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득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12.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울산다운2 A-9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605-82-11744)	(주)시티건설외4 (주)동화외1 (주)유선통신외2 (주)환승이엔지외1	-	(주)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13. 주거약자용 주택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대상자에 따른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24.03.26(화)~03.28(목))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또는 홈페이지 참고
- ▶ 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전자계약 체결하시는 분 중 편의증진시설 설치 해당세대인 경우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우체국 소인이 '24.03.28(목) 이내'여야 함)

* (발송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1H 부산울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울산다운2 A-9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경사로) 마루귀틀에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비디오폰) 바닥에서 1.2m 이내	
	(시각경보기) 세대별로 설치	청각장애인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부엌	(좌식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에서 1.2m 이내	
욕실	(세면기) 높낮이 조절용 설치	
	(여유공간) 좌변기 옆 75cm 이상 확보	
침실	(조명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설치 시설(욕실 출입문 개폐방향 변경(뛰어단어), 안전손잡이(현관, 샤워실, 좌변기, 세면대), 바닥미끄럼방지, 바닥단차 제거, 비상연락장치(거실, 욕실, 침실), 동체감지기, 높낮이조절 샤워기가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계약자가 신청 시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증환자를 말합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위해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 출입구 폭 80cm 이상 확대(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자형) 설치		
욕실 (1개소에 한함)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주방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에 설치		
거실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청각장애인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문의처	전 화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인터넷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 울산다운2 A-9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홈페이지(www.lhdu-a9.co.kr)
당첨자 ARS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신청접수	· PC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12.0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별첨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선택사항 신청서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선택사항 설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1. 당첨자 성명	2. 당첨자 생년월일	-
3. 주소	(전화번호 :)	
4. 입주세대	울산다운2 A-9 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동 호 (규모 : 전용면적 m ²)	
5. 주거약자 성명	6. 주거약자 생년월일	-

구분	항 목	시 설 내 용	신청대상	신청
현관	①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input type="checkbox"/>
	② 비디오폰 높이조정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설치	청각장애인	<input type="checkbox"/>
거실	③ 거실조명밝기 및 시각경보기 설치	·거실조명 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설치	청각장애인	<input type="checkbox"/>
	④ 좌식 싱크대	·좌식싱크대 설치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input type="checkbox"/>
주방	⑤ 가스밸브 높이조정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input type="checkbox"/>
	⑥ 높낮이 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기 설치		<input type="checkbox"/>
욕실	⑦ 수건걸이 높이조정	·1.0~1.2m 높이에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침실	⑧ 침실조명밝기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⑨ 음성유도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input type="checkbox"/>

※ 편의시설 제공대상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2에 의한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로서 최초 입주자로서 본인 및 부양가족 중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로서 공급신청자가 희망하는 가구

8. 제출서류
- 1) 장애인 수첩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지원대상자확인원, 진단서 등 기타 증명서류 1부.
 - 2) 주민등록 등본 1부.
- ※ 서류 제출 시 주민번호 뒤 7자리는 삭제 후 제출

본인이 신청을 희망한 편의시설 내용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